# 2013년 4대 보험료 계산

### 건강보험료율과 노인짱기요양보험료

건강보험료 근로자 부담액 = 건강보험료(●) + 노인장기요양보험료(❷)

- ① 건강보험료 = 월급여(총급여 비과세급여) × 2.945%(10원미만 단수 버림)
-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(♠) × 6.55%(10원미만 단수 버림)

#### 건강보험료

× 보험료율

가입자부담(50%) 보험료 산정방법 : 월 보험(10원미만 단수 버림)료 = 보수월액

보수월액(월평균보수 = 월급여) = 연간 총보수액(총급여 - 비과세소득) ÷ 근무월수 보험료율 : 5.89%(사용자 2.945%, 종업원 2.945%)(10원미만 단수 버림)

| 계           | 종업원부담       | 사용자부담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|-------------|
| 5.89(100%)% | 2.945(50%)% | 2.945(50%)% |

| 보수월액 범위        | 보험료율   | 월보험료 산정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28만원 미만        | 2.945% | = 28만원 × 2.945%    |
| 28만원 ~ 7,810만원 | 2.945% | = 실제 보수월액 × 2.945% |
| 7,810만원 초과     | 2.945% | = 7,810만원 × 2.945% |

[예시] 보수월액이 991,600원일 때, 계산방법

건강보험료 : 991.600(보수월액) x 5.89%(건강보험료율) = 가입자 부담금

29,200원, 사업주 부담금 29,200원

장기요양보험료 : 58,400원(건강보험료) x 6.55%(장기요양보험료율) = 가입자

부담금 1,910원, 사업자 부담금 1,910원



직장가입자가 2이상 적용사업장에서 보수를 받고 있는 경우에는 각 사업 장에서 받고 있는 보수를 기준으로 각각 보수월액을 결정한다.

보수월액에 따라 산정한 직장가입자의 보험료액을 직장가입자 및 사업주 등이 각각 1/2씩 부담하는 경우 그 금액에 10원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 에는 이를 절사한다.

#### 노인장기요양보험료

노인장기요양보험료 = 건강보험료  $\times$  6.55%(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)

= (총급여 - 비과세급여) × 2.945% × 6.55%

### 국민연금료율

월 국민연금(10원미만 단수 버림)

= 기준소득월액[월급여(총급여 - 비과세소득)] × 국민연금료율

기준소득월액 = 연간 총보수액(총급여 - 비과세소득) ÷ 근무월수

보험료율 : 9%(사용자 4.5%, 종업원 4.5%)(10원미만 단수 버림)

| Й        | 종업원부담     | 사용자부담     |
|----------|-----------|-----------|
| 9(100%)% | 4.5(50%)% | 4.5(50%)% |

| 기준소득월액 범위    | 국민연금료율 | 월국민연금 산정        |
|--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---------|
| 24만원 미만      | 4.5%   | = 24만원 × 4.5%   |
| 24만원 ~ 389만원 | 4.5%   | = 기준소득월액 × 4.5% |
| 389만원 초과     | 4.5%   | = 389만원 × 4.5%  |













[예시] 기준소득월액은 최저 24만원에서 최고금액은 389만원까지의 범위로 결정하게 된다. 따라서 신고한 소득월액이 24만원보다 적으면 24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하고, 389만원보다 많으면 389만원을 기준소득월액으로 한다.

## 고용보험료율

고용보험료 = 월급여(총급여 - 비과세소득) × 보험료율

|               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근로자   | 사업주   |
|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         | 실업급여                    | 0.55% | 0.55% |
|               | 150인 미만 기업              |       | 0.25% |
| 고용안정,<br>직업능력 | 150인 이상(우선지원대상기업)       |       | 0.45% |
| 개발사업          | 150인 이상~1000인 미만기업      |       | 0.65% |
|               | 1,000인 이상 기업, 국가·지방자치단체 |       | 0.85% |

주 우선지원대상기업

① 광업 : 300인 이하

❷ 제조업 : 500인 이하❸ 건설업 : 300인 이하

◆ 운수, 창고 및 통신업 : 300인 이하

**⑤ 1** 내지 **4** 이외의 산업 : 100인 이하

⑤ 위 ● 내지 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기업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1항 및

제3항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

✔ ● 내지 ●의 규정에 불구하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 집단 중 자산총액이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



에 속하는 회사로 통지 받은 회사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보험연도의 다음 보험연도부터 이를 우선지원대상기업으로 보지 않는다.

- ① 임금총액에 산입되는 것
- 가. 통화로 지급되는 것
- 1) 기본급
- 2) 연 · 월차 유급휴가수당
- 3) 연장 · 야간 · 휴일근로수당
- 4) 특수작업 · 위험작업 · 기술수당
- 5) 임원 · 직책수당
- 6) 일 · 숙직수당
- 7) 장려 · 개근수당
- 8)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에서 근로조건의 하나로서 근로 자에게 정기적,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적으로 계 속하여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다음의 것
- 가) 상여금
- 나) 통근비(정기승차권)
- 다) 사택수당
- 라) 월동·연료수당
- 마) 지역수당(한·냉 벽지수당)
- 바) 교육수당
- 사) 별거수당
- 아) 물가수당



#### 자) 조정수당

- 9) 가족수당이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된 것
- 10) "봉사료"를 사용자가 일괄 집중관리하여 배분하는 경우에 그 배분 금액
- 나. 현물로 지급되는 것

법령 또는 단체협약, 취업규칙, 근로계약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되는 현물급여(예 : 급식)

- 다. 고용보험료 등의 산정범위에 속하는 것으로 고용보험법 제2조제4호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품(노조 전임자 임금, 휴업수당수당,출산휴가 중 회사로부터 받는 금품) 및 고용보험법 제2조의2에 의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임금
- ② 임금총액에 산입되지 않는 것
- 가. 성질상 임금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
- 1) 통화로 지급되는 것
- 가) 결혼축하금
- 나) 조의금
- 다) 재해위문금
- 라) 휴업보상금
- 마) 실비변상으로 지급되는 것(예 : 기구손실금, 작업용품대, 작업상 제공하는 피복비, 출장여비)
- 2) 현물로 지급되는 것
- 가) 근로자로부터 대금을 징수하는 현물급여
- 나) 작업상 필수적으로 지급되는 현물급여(예시 : 작업복, 작업모, 작업화 등)



- 다) 복리후생시설로서 지급되는 현물급여(예시 : 주택설비 · 조명 · 용수 · 의료 등의 제공, 급식 · 영양식품의 지급 등)
- 나. 기타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
- 1) 퇴직금(단체협약, 취업규칙 등에 규정함을 불문한다)

#### **...** 산째보험료율

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. 하나의 사업장 안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이상의 사업이 행해지는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해서 적용한다.

- 근로자수가 많은 사업
- 2 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
- **3** 상기 방법에 의해서 주된 사업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매출액이 많은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결정

| 시업종류        | 요율  | 시업종류                | 요율 |
|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1. 광업       |     | 계량기・광학기계・기타정밀기구 제조업 | 10 |
| 석탄광업        | 340 | 수제품 제조업             | 16 |
| 금속 및 비금속 광업 | 129 | 기타제조업               | 31 |
| 채석업         | 238 | 3. 전기·가스·증기 및 수도사업  | 9  |
| 석회석광업       | 77  | 4. 건설업              | 37 |
| 기타 광업       | 67  | 5. 운수창고 및 통신업       |    |
| 2. 제조업      |     | 철도궤도 및 삭도운수업        | 8  |
| 식료품제조업      | 20  | 여객자동차운수업            | 19 |
| 담배제조업       | 8   | 소형화물운수업 및 택배압퀵서비스업  | 24 |













| 시업종류                 | 요율  | 시업종류              | 요율  |
|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갑)     | 13  | 화물자동차운수업          | 71  |
| 섬유 또는 섬유제품제조업(을)     | 23  | 수상운수업, 항만하역 및 화물  | 00  |
|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       | 47  | 취급시업              | 30  |
| 펄프지류제조업 및 제본 또는      | 0.5 | 항공운수업             | 7   |
| 인쇄물 기공업              | 25  | 운수관련 서비스업         | 9   |
| 신문·화폐발행, 출판업 및 인쇄업   | 10  | 창고업               | 15  |
| 화학제품 제조업             | 17  | 통신업               | 11  |
| 의약품 및 화장품 향료 제조업     | 9   | 6. 임업             | 80  |
|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| 17  | 7. 어업             |     |
| 고무제품 제조업             | 22  | 어업                | 252 |
| 유리 제조업               | 17  | 양식어업 및 어업관련 서비스업  | 18  |
| 도자기 및 기타 요업제품 제조업    | 31  | 8. 농업             | 27  |
| 시멘트 제조업              | 27  | 9. 기타의 사업         |     |
| 비금속광물제품 및 금속제품 제조업 또 | 40  | 건물 등의 종합관리시업      | 18  |
| 는 금속기공업              | 42  | 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      | 31  |
| 금속제련업                | 11  | 기타의 각종사업          | 10  |
| 금속재료품 제조업            | 34  | 전문기술서비스업          | 6   |
| 도금업                  | 21  |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      | 7   |
| 기계기구 제조업             | 22  | 교육서비스업            | 7   |
| 전기기계기구 제조업           | 12  |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   | 10  |
| 전자제품 제조업             | 7   | 부동산업 및 임대업        | 9   |
| 선박건조 및 수리업           | 27  | 오락문화 및 운동관련 시업    | 10  |
| 수송용기계기구 제조업          | 18  |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  | 10  |
| 자동차 및 모터사이클 수리업      | 18  | 0. 금융 및 보험업       | 6   |
|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* 해외파견자: 17/1,000 |     |



| Wall For Ho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±15 | 건강 | 국민 | 고용      |
|--|-----|----|----|---------|
| 비과세 소득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도  | 보험 | 연금 | ·<br>산재 |
| 대통령령이 정하는 복무중인 병이 받는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| -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법률에 의하여 동원된 자가 그 동원직장에서 받는 급여                    | -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「산업재해보상보험법」에 따라 수급권자가 받는 요양급여, 휴업급여, 장해급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여, 간병급여, 유족급여, 유족특별급여, 장애특별급여, 장의비 또는 근로의<br>    | _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제공으로 인한 부상·질병·시망과 관련하여 근로자나 그 유족이 받는 배상·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보상 또는 위자(慰藉)의 성질이 있는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「근로기준법」 또는 「선원법」에 따라 근로자·선원 및 그 유족이 받는 요양보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상금, 휴업보상금, 상병보상금(傷病補償金), 일시보상금, 장해보상금, 유         | -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족보상금, 행방불명보상금, 소지품 유실보상금, 장의비 및 장제비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「고용보험법」에 따라 받는 실업급여, 육이휴직 급여, 산전후휴가 급여, 「제대<br>-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전직지원금, 「국가공무원법」·「지방공무원법<br>    | _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」에 따른 공무원 또는 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・「별정우체국법」을 적용받는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「국민연금법」에 따라 받는 반환일시금(사망으로 받는 것만 해당한다) 및 사망       | _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일시금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「공무원연금법」・「군인연금법」・「시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 또는 「별정우체국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법」에 따라 받는 요양비·요양일시금·장해보상금·시망조위금·시망보상    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금·유족보상금·유족일시금·유족연금일시금·유족연금부가금·유족연금특              | -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별부가금·재해부조금 및 재해보상금 또는 신체·정신상의 장해·질병으로 인 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한 휴직기간에 받는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「초·중등교육법」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(외국에 있는 이와 유사한 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교육기관을 포함한다)와 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」에 의한 직업능력개발훈련 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시설의 입학금·수업료·수강료 기타 공납금 중 다음의 요건을 갖춘 학자금  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1.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업무와 관련 있는 교육·훈련을 위하여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받는 것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<br>  2. 당해 근로자가 종사하는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  | -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따라 받는 것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^ ^   3. 교육·훈련기간이 6월이상인 경우 교육·훈련 후 당해교육기간을 초과하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여 근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받      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는 것  |     |    |    |         |













| 비과세 소득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하두       | 건강 | 국민 | 고용      |
|--|----|----------|----|----|---------|
| 미교제 소득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인노       | 보험 | 연금 | ·<br>산재 |
| 「선원법」에 의하여 받는 식료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-    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법령·조레에 의한 위원회 등의 보수를 받지 아니하는 위원(학술원 및 예술 | 원  |      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의 회원을 포함)등이 받는 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|    | ^  |         |
| 일직료·숙직료 또는 여비로서 실비변상정도의 금액(종업원의 소유차량을    | 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종업원이 직접 운전하여 사용자의 업무수행에 이용하고 시내출장등에 소요   | 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된 실제여비를 받는 대신에 그 소요경비를 당해 사업체의 규칙등에 의하여  | _  |      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정하여진 지급기준에 따라 받는 금액중 월 20만원이내의 금액을 포함)   | 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법령·조례에 의하여 제복을 착용하여야 하는 자가 받는 제복·제모 및    | 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제화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_  |      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병원·시험실·금융기관·공장·광산에서 근무하는 자 또는 특수한 작업이    |    |          |    | ×  | ×       |
| 나 역무에 종사하는 자가 받는 작업복이나 그 직장에서만 착용하는 피복   | _  |          | X  | ^  | ^       |
| 특수분이에 종사하는 군인이 받는 낙하산강하위험수당·수중파괴작업위      | 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험수당·잠수부위험수당·고전압위험수당·폭발물위험수당·비행수당·        | 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비무장지대근무수당ㆍ전방초소근무수당ㆍ함정근무수당 및 수륙양용궤도       | -  |      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차량승무수당, 특수분이에 종사하는 경찰공무원이 받는 경찰특수전술업     | 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무수당과 경호공무원이 받는 경호수당                      |  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「선원법」의 규정에 의한 선원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자(제16조   | 월  |  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및 제17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자를 제외한다)가 받는 승선수당, 경찰공  | _  |          |    |    | .,      |
| 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·항공수당 및 소방공무원이 받는 함정근무수당    | 2  |          | X  | ×  | ×       |
| · 항공수당 · 화재진화수당                          | 만원 | 4  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광산근로자가 받는 입갱수당 및 발피수당                    | -  |      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교원 및 연구기관 연구활동 직접 종사자의 연구보조비 또는 연구활동비    | 월  |      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통신·신문, 방송채널사용사업에 종사하는 기자(상시 고용되어 취재활동을   | 2  | 0        | ×  | X  | ×       |
| 하는 논설위원 및 만화기를 포함)가 취재활동과 관련하여 받는 취재수당   |    |          | ^  |    |         |
| 벽지에 근무함으로 인하여 받는 벽지수당                    | 만원 | <b>d</b> | ×  | ×  | ×       |
| 천재·지변 기타 재해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                | -  |          | ×  | ×  | ×       |



| 비과세 소득의 범위   |         | 하두   | 건강 | 국민 | 고용      |
|--|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-----|
| 비파제 소득의 남뒤   |         | 인도   | 보험 | 연금 | ·<br>산재 |
| 외국정부(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및 연방국가인 외국의 지방정부를 포함                 | 한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다. 이하 같다)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제기관에 근무하는 자로서 다              | 룅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령령이 정하는 자가 받는 급여. 다만, 그 외국정부가 그 나라에서 근무하             | 는       | _    | 0  | ×  | ×       |
| 우리나라 공무원이 받는 급여에 대하여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경                | 양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「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의하여 받는 보훈급여금                | 및       |  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학습보조비  |         | _    |    |    | ^       |
| 「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받는 연금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-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에 주둔중인 군인·군무원이 받는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_    |    | ×  | ×       |
| 급여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종군한 군인·군무원이 전사(전상으로 인한 사망을 포함한다. 이하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_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같다)한 경우 그 전사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국외 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지역에서 근로를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제공하고 받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국외 또는 「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」에 의한 북한지역(이하 이 조                | 월       | 100만 |    | ×  | ×       |
| 에서 "국외 등"이라 한다)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원양어업 선박 또는 국외등을 항행하는 선박 또는 국외 등의 건설현장                | 월(      | 300만 |    | ×  | ×       |
| 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보수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「국민건강보험법」・「고용보험법」・「국민연금법」・「공무원연금법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·「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」·「군인연금법」·「근로자퇴직급여 보장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_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법」・「과학기술인공제회법」또는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에 따라 국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가·지방자치단체 또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담금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생산직 및 그 관련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로서 급여수준 및 직종등을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근로자가 대통령령이 정하는 연장시간근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로 · 아간근로 또는 휴일근로로 인하여 받는 급여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     |    |    |         |
| 월정액급여 100만원이하인 생산직 근로자 등이 받는 연장시간·이간                 | 연;      | 240만 | ×  | ×  | ×       |
| 또는 휴일근무로 인하여 통상임금에 가산하여 지급받는 급여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   |      |    |    | ^       |
| 광산근로자 및 일용근로자의 연장시간·이간 또는 휴일근무 수당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| -    | ×  | ×  | ×       |
| 「선원법」에 의하여 받는 생산수당(비율급으로 받는 경우에는 월 고정<br>급을 초과하는 비율급 | 연;<br>원 | 240만 | ×  | ×  | ×       |



| 비과세 소득의 범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한도   | 건강 | 국민 | 고용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|----|----|
| 미피제 소득의 검취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인도   | 보험 | 연금 | 산재 |
|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기타   | _    | ×  | ×  | ×  |
| 음식물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_    | ^  | ^  | ^  |
| 식사 기타 음식물을 제공받지 아니하는 근로자가 받는 식사대      | 월10만 | ×  | ×  | ×  |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원    |    | ^  | ^  |
|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 | 월10만 | ×  | ×  | ×  |
| 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로서 월 10만원 이내의 금액      | 원    | ^  | ^  | ^  |
| 「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군포로가 지급 | _    | ×  | ×  | ×  |
| 받는 보수 및 퇴직일시금                         | _    | ^  | ^  | ^  |